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8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이연희·박 정·복기왕

한민수 · 윤종군 · 박상혁

허종식 • 한준호 • 임미애

정준호 · 김남희 · 문진석

김윤덕 • 이춘석 • 이정문

서미화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에"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
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속) ①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	
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u>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신</u>
	고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⑦
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	
를 준용한다. 다만, <u>피상속인이</u>	<u>제1항에서 정</u>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	한 기간 내에
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	
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